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46 발의연월일: 2022. 4. 7.

발 의 자:김영배·이병훈·박광온

설 훈·박성준·홍익표

이장섭 · 민형배 · 유정주

오영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고 결정하였는바,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위헌결정 이후 피해 자의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한해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제외하고,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피고인 간 대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제30조제6항 및 제40조).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6항 중 "피해자의"를 "피해자(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 한한다)의" 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중계장치에"를 "중계장치 등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한다.

② 법원은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 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 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신체적인 또 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 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 미약한 피해자에 한한다)의----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 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40조(비디오 등 <u>중계장치에</u> 의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현행과 같 한 증인신문) ① (생 략) 음) <신 <u>설></u> ② 법원은 피고인 등과 대면하 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 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 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한다.	